



BC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가맹점 가입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가맹점 약관

카드 취급 및 매입 안내

EDC 서비스 안내

- EDC 서비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매출표를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승인이 아닌 경우 (전화, ARS, 인터넷 등)에는 카드사에 매출표를 접수하셔야만 자동 입금되는 등 가맹점별로 처리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로 확인바랍니다.
- EDC 서비스 매출 중 카드 1매로 연속하여 2건 이상 동일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상 매출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할 수 있으며,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 만큼 입금 일자가顺延됩니다.

해외 카드 매입 안내

- 해외(MASTER, VISA, JCB, UnionPay, AMEX 등)카드 수납서비스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 수수료율은 BC카드사가 정한 해외카드(MASTER, VISA, JCB, UnionPay, AMEX 등)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UnionPay카드 거래 시 반드시 매출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UnionPay 카드의 수납을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상에 "온라인" 기능과 PIN 입력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말기의 "온라인" 기능 추가는 단말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단, EDI 가맹점에서 UnionPay카드 취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BC카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 온오프카드 전용 콜센터(중국어 상담 가능) : 02-950-8688, 10시~19시/365일

비정상 매출표 접수 안내

- 가맹점은 BC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신용판매방법) ②항과 같이 매출표를 작성하여 카드사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비정상 매출표 [수기작성, 기재사항누락 등 사유]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출표 접수 시 비정상 매출표 접수확인서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매출표 처리 또는 대금청구 과정에서 회원의 민원이 발생되면 매출 취소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환급)등으로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은 여권)사본, 입금통장 사본, 인/허가증 사본(요식/주점 관련 업종)
- ※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날인시)
-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 ※ 비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 확인 서류



BC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비고란

특이/요청 사항 기재

* 표시항목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장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설립목적*	비영리법인 설립 인-허가서의 설립목적을 기재			
	사업장명*	간판명*	간판명 및 브랜드 필수기재		전화번호*	회원안내* ()	-		
		상 호*				카드사연락* ()	-		
		영문명*			주유소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유소 <input type="checkbox"/> 충전소 <input type="checkbox"/> 점업(□SK □GS □S-oil □OilBank □기타)			
주소*(사업장)					FAX번호 ()	-			
					영업개시일	년	월	일	
주소*(본사)					업태*				
					주취급품목*				
대표자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E-mail주소*	@		
외국인 대표자	영문성명*	여권 상의 정보기재		국적*	여권 상의 정보기재		여권번호*	여권 상의 정보기재	
결제 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기타	단말기 구분 <input type="checkbox"/> CAT단말기 <input type="checkbox"/> POS단말기 <input type="checkbox"/> 등록단말기식별번호 ()					선불카드 수납을 희망하지 않는 가맹점은 "선불카드 미수납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불카드 수납이 불가한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등록단말기식별번호 미기재시 가맹점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지로 카드결제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지로수납업체로 등록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신청 <input type="checkbox"/> 지로코드 <input type="text"/>			

당사(본인)는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여신전보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BC카드(주) 귀중 BC카드 (VISA, MASTER, JCB, UnionPay, AMEX)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서명 (인)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대표자 가맹점 가입 동의서 ※ [공동대표자]일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C카드(주) 귀중
본인은 상기업체의 공동대표로 가맹점 가입에 따라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 약관" 및 가맹점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에 동의하고 각종 제신고(결제계좌변경, 거래인감 변경/해지 및 정지, 주소변경 등)처리 등 가맹점과 관련된 제반 행위를 상기 위임 대표에 위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위임대표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동의합니다.

공동대표자명	서명 (인)	주민등록번호	-
공동대표자명	서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	가맹점 가입 신청서 접수위임장 ※ 가맹점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BC카드 가맹점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가맹점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서명 (인)	모집인/대리인 성명*	모집인 계약 시 날인한 인장을 날인	서명 (인)
VAN명		VAN 대리점명		모집인코드		모집인 연락처
실사 확인 정보	영업여부*	정상영업 <input type="checkbox"/>	임시휴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주소일치 여부*	일 치 <input type="checkbox"/> 불일치 <input type="checkbox"/> (사유:)
	매장유무 및 면적*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매장소재지*	일반상가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급 품목*	주취급품목 () 기타취급품목 ()		판매 형태*	매장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회원제 <input type="checkbox"/> 통신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본인신청여부 확인*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input type="checkbox"/>	실사일 및 담당자*	20 년 월 일.	모집인코드: 성명 (인)

기타	매장 매출관리 서비스(SALT 서비스)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 SALT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비씨카드 가맹점서비스 (중복매출처리, 무이자할부신청 등)"를 POS/APP/PC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를 신청 시 스마트로(SMARTRO)로 신청정보를 전송하며, 접수신청 완료 후 신청결과 및 이용 계정에 대해서 문자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 가입신청서를 통한 SALT 서비스 신청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문의: 1666-9114 > SALT 문의 (6번) > 신청 및 설치 문의 (1번) / 응대시간: 09시 ~ 18시	
가맹점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가맹점 계약 관련 정보 및 변경사항에 대해 전자고지 서류로 통지해 드립니다. (전자고지 서류는 당사 제휴사인 스타클립(www.upostbank.com)에서 확인 가능) ※ 미신청, 또는 미신청시에는 가맹점 계약 관련 정보 및 변경사항에 대해 E-mail, LMS, SMS, 우편 등의 방식 중 당사가 정한 방식으로 통지됩니다.		

고객확인관련 필수 기재 사항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고객확인 의무) 및 시행령 제10조의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서식입니다.

실 제 소 유 자 확 인 사 항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합니까? (‘아니오’ 선택 시 하단 실제소유자 정보란 기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실제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성명(영문) 국적	여권 상의 정보기재	
	법인사업자 · 임의단체	주주명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주주명부가 있을 시 아래 확인사항 모두 생략합니다.			
		확인생략 대상법인	<input type="checkbox"/>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실제소유자 구분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1)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input type="checkbox"/> 2)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대 지분 소유자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중 1인 ③ ①, ② 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실제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성명(영문) 국적	여권 상의 정보기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및 금융사고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나. 수집·이용 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 정보(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등)
 - 거래내역정보(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거래 물품정보, 가맹점 체결 및 해지, 가맹점번호, 계좌번호, 계좌은행, 예금주 등)
 -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성별, 국적 등)
 - 공공기관 정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납부 정보, 전기사용정보, 출입국정보 등)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 * 이하에서는 가맹점 정보, 거래내역정보, 개인식별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다. 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등의 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본인은 귀사가 상기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 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귀사 및 제휴사(귀사 고객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하여 제휴계약을 체결 한 자)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등의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자료 생성 및 상품·서비스 개발·연구, 대출 상품 안내, 타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광고, 귀사가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나.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 및 대출 상품 안내·판매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공공기관정보 등
-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개발원 전산망의 보험정보 조회,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고객아이디, 접속 일시 등) 등

다. 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본인은 귀사가 상기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 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선택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카드상품(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 1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 2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이동통신회사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조회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본인인증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등

2. 조회목적 : 본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신용관련 통계분석 모형개발 등

3. 조회 동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당사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 됩니다.

본인은 귀하가 상기 조회 목적(효력 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 번호, 여권 번호 등)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 1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 2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며 이 계약 소멸과 동시에 본 동의서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상실 합니다.
-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신용정보는 일정기간 보존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취득(수집) 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5조의 2)
 - 신용조회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 조회 업무
 -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공공기관정보 등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자
 - 제공대상 기관 : 비씨카드 회사 및 제휴회사, 카드사, 캐피탈 등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법원/공공기관, 여신금융협회, 국제청, 관세청,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 등
 -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전업카드사 및 검영은행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 귀사 및 회사원, 제휴회사원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고객심사, 신용관련 통계분석 모형개발 등
 - 회원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카드사용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회원의 신용카드 등을 회원이 소속된 회사 및 기타 단체의 경비처리 목적으로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 범죄의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 또는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제공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여신금융협회의 법령상 의무 이행
 - 신용카드이용계약 설정, 유지 및 정보주체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카드회사간 정보교환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등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 근거한 기간까지 / 신용도 평가,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및 사후 관리 등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다.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제공대상기관 : 귀하가 영위하는 아래 업무처리를 수탁받은 업체, 본인인증업체 등
 - ※ 업무제휴계약변경에 따라 제휴/위탁 등 업체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씨카드(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 제공목적 : DM발송, 문자발송, E-mail발송, TM, 전화상담, 가맹점실사, 매출표처리, 반송우편물, 유무선 인터넷 업무처리, 본인인증업무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공공기관정보, 본인인증정보 등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 현황 (필수동의)

제공목적	제공업체	개인(신용)정보 제공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우편물(안내문 등) 배송 및 반송	빌포스트(주), 대성전산(주), (주)데이터존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가맹점주소	3일
우편물(매출표 및 매출집계표) 배송 및 반송	세한비즈니스폼(주)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가맹점우편번호, 가맹점주소, 가맹점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원사전화번호, 회원사주소, 회원사우편번호	10일
가맹점신청서 등 문서관리 업체	문서지기(주)	가입 신청상 기재항목	5년
콜센터 고객상담, 가맹점 신규개설 및 민원처리 업무	(주)에이치엔씨네트워크	주민번호, 성명, 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업무만 수행
가맹점 입금계좌 실명조회	금융결제원, 케이아이비넷(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5년 보관(계좌번호의 경우 4자리 삭제 후 보관)
문자메세지 발송	(주)kt, (주)케이이스카이버	성명(마스킹), 휴대폰번호, 회원사회원번호, 카드뒷4자리, 승인금액, 승인가맹점명, 결제금액, 결제일, 은행명, 기타문구	20일
가맹점 신규, 갱신 안내문 전자고지 서비스	스타클럽(주)	가맹점주소, 가맹점명, 가맹점가입일자, 대표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수수료율, 매출한도, 키인한도	계약해지시까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믿음법무사사무소	성명, 주소, 주민번호	15일
리스크관리	나이스평가정보(주), KCB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약종료시
가맹점 대표자 본인인증	나이스평가정보(주)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주민번호 뒤 1자리, 성명, 이동통신사정보	5년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바이피(주), (주)에이치엔씨네트워크, (주)인터트레비스, (주)다우기술, 롯데렌탈(주),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주)비즈니스사이트, (주)굿디, (주)백옥에스원, (주)신세계, (주)오픈갤러리, (주)라이프캠퍼스, NICE평가정보(주) 등 귀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등 아래의 이용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현대해상화재보험, AIG손해보험, 에이스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AIA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에이스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카디프생명보험, K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현대라이프, 하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KDB생명보험, 하이카다이렉트 등 보험회사
- (주)케이티, (주)케이티디에스, 케이티커머스(주), 케이티텔레캅(주), 케이티파워텔(주), (주)스마트로,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케이티뮤직, (주)케이티스, (주)케이티씨에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케이티에스테이트, (주)케이티리빙, (주)케이티스포츠, 케이티하이텔(주), (주)케이티엠모바일, (주)케이티엠앤에스, (주)케이티서비스북부, (주)케이티서비스남부 등 가맹점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제공하는 자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 현황 (선택동의)

제공목적	제공업체	개인(신용)정보 제공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주)스마트로의 SALT 서비스 가입 및 FREEPay 신청 시 가맹점정보 확인	(주)스마트로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우편번호, 가맹점주소, 사업자번호, 가맹점해지일	유효가맹점 : 계약기간 무효가맹점 : 즉시폐기
TOP 가맹점 모집대행	(주)인터트레비스, (주)스마트로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업종명, 카드수수료율, 가맹점전화번호, 가맹점주소, 매출액, 입금단축 서비스대상여부	3개월
가맹점 마케팅 기획 및 추진	비씨카드 회원사 : 우리카드, SC 제일은행,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IBK 기업은행, KB 국민카드,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씨티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제휴회원사 : KDB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동부증권, 새마을금고, 신한, 중국은행, 현대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롯데카드, 우체국, 유진투자증권, 저축은행중앙회, 케이뱅크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업종명, 매출액(해당 가맹점에서의 비씨카드 회원사 및 제휴 회원사 고객 매출액)	마케팅 기획 및 추진 종료 시 까지

※ 제휴/위탁 등 업체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씨카드(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 목적

- 귀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고객만족도조사, 신용카드 유치(이용 권유)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회사들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석 서비스 제공, 사은·판촉행사, 보험개발원조회,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개발 연구, 마케팅 활동, TOP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등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공공기관정보 등
- ※ 가맹점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품 서비스 소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 할 때 까지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와 동일)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선택적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카드상품(서비스)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 1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 2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C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 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용어의 정의)

-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BC카드(은행) (이하 "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 ④ "카드회원"이란 카드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⑤ "결제대행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 ⑥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 ⑦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⑧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 조 (약관의 적용)

①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 및 부금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 "경료·경정법"에 따른 경료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번만 연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② 가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회원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 등이 제시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 장 신용판매

제4 조 (카드거래 한도)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유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 조 (신용판매 방법)

- 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를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포,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⑧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의 "회원용"은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거래로서 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표 또는 취소매출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⑨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⑩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설물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6 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 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3.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⑧ 가맹점은 카드로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로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⑨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제2조 제6항에 따른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⑩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⑪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 ⑫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제7 조 (할부거래)

- ①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계약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8 조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 ① 가맹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②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의 청약철회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에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사서의 인도 또는 제공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한 청약 철회한 경우
 - ④ 가맹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항변행위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지급일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대금 환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13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 9 조 (매출전표의 접수)

-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가맹점수수료율)

-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일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카드 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 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 #### 제 11 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 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지위를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공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 12 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에서의 매출 취소 또는 카드회원의 민원 제기 증가 등으로 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제5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음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지위를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또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또는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 14 조 (대금의 지급 보류)

-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채납처분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

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지치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 카드 표면에 서명이 없거나, 카드 표면에 기재된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현저히 구별되는 경우
-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 카드사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회원의 분쟁)

- 카드회원의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회원제·다단계판매·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지침 및 계약해지 등

제 17 조 (가맹점 거래지침 및 계약해지)

-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0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지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지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채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아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관이 불가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제 18 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등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보칙

제 20 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1 조 (가맹점 표시물)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시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작표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시물 및 제작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시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가맹된일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E-Mail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BC카드 가맹점 부속약관 (2016. 4. 1 시행)

제 1 조 (목적)

이 부속약관은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BC카드 가맹점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사'란 BC카드 회원사 및 제휴회사를 말합니다.
 ② 표준약관 제2조 2항에서 정한 '카드'는 BC카드 및 회원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③ 표준약관 제2조 4항에서 정한 '카드회원'은 BC카드 및 회원사의 회원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자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해외카드의 취급)

표준약관 제3조 4항에 따라 가맹점이 BC카드가 제휴하고 있는 해외 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는 경우 BC카드는 회원사를 대리합니다. 단, 회원사와 BC카드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BC카드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매출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Master Card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